

##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12월 9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9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 휘장,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캐릭터사업 등)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제3조, 제6조)

나. 상징물관련 사업(제7조) : 사업의 예시 및 민간위탁 근거,

다.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징수, 면제(제8조, 제9조)

라.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제10조)

마. 상징물사용 위반시 조치사항(제11조)

-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

바. 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는 폐지(부칙) 등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 휘장, 문장,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기, 휘장, 문장, 캐릭터 등의 모양과 규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기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 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징물 사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